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2024.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36호로 2024년 11월 8일 양송이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에 제공하던 급식관리를 노인 및 장애인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전문 영양사를 통한 맞춤 식단과 조리법 등을 제공하고, 식생활 교육 컨설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1.12.~2024.11.17./5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을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1]를 포함하여 규정함.

---

1)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1호[2]에 따른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급식소”의 정의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 소내 시설로 정의함.
- **안 제6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3]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추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區)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사업대상: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 227개소

○ 운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예산액: 646,880 천원

○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소 관리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강화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 본 안건을 통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2021년 7월 27일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의 운영체계를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 운영체계[4]와 유사하고, 집단급식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어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센터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또한, 상위법

4)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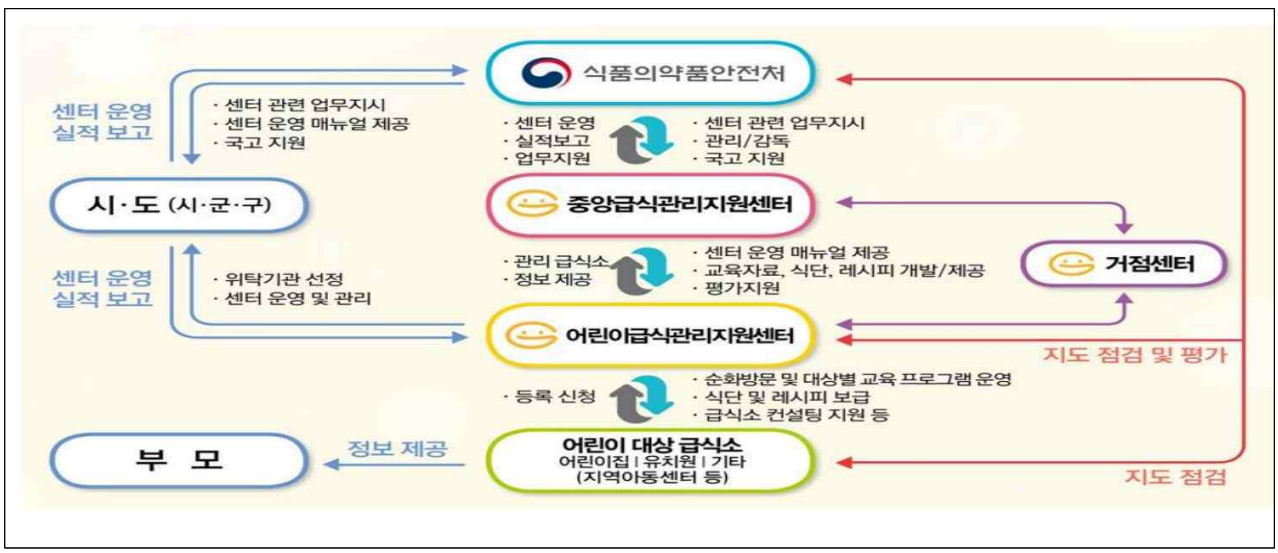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5])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旣)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區)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25년 7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189개소 중('24.7월 기준) 10개소를 선정하여 급식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참고로, 서울특별시 5개 자치구(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마포구, 중랑구) 및 전국에서는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5)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참 고 자 료

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